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1923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광호, 서윤기, 권영희,
장상기, 최웅식, 김상훈,
이은주, 정지권, 김동식,
홍성룡, 송아량, 박기재,
이세열, 우형찬, 송도호,
정진철, 김화숙 의원(17명)

1. 주 문

- 대형택시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1인승 이상의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요금제”를 따르는 반면, 대형승용택시는 모범택시와 동일한 기준의 요금을 따르고 있어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고급화 및 다양성 개선이 어려운 등 차별로 볼 수 있어, 6~10인승 대형승용택시의 경우에도 대형승합택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운임을 신고하는 “자율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서는 대형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6~10인), 승합자동차(13인승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같은 대형택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승합택시는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1인승 인사의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요금제”

를 따르는 반면, 대형승용택시는 모범택시와 동일한 기준의 요금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대형승용택시의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고급화 및 다양성 개선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대형승용택시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음

- 또한, 실제 대형승합택시로 이용되고 있는 스타렉스와 카니발의 경우 대형승용택시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형승용택시에 비해 운행시 마지막 열을 접어두고 운행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승객수에 차이가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승객 수에 따른 요금제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됨
- 따라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6~10인승 대형승용택시의 경우에도 대형승합택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운임을 신고하는 “자율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토교통위원회

나. 정 부 :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대형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6~10인)와 승합자동차(13인승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카니발과 스타렉스가 주종을 이루는 대형승용택시 331대와 대형승합택시가 246대 각각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같은 대형택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승합택시는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의한 요금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운임을 신고하는 일명 “자율요금제”를 따르는 반면, 대형승용택시는 모범택시와 동일한 기준요금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승객입장에서는 대형승용택시와 대형승합택시 간 외형구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형태의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요금 차이에 대한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요금제를 통해 승객에 대한 이용 서비스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실현하기 원활한데 비해 대형승용택시의 경우 요금 기준과 요율이 정해져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결국 대형택시간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제 대형승합택시로 이용되고 있는 스타렉스와 카니발의 경우 대형승용택시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형승용택시에 비해 앞열 좌석

공간도 좁고 실제 운행시 마지막 열을 접어두고 운행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 승객수에 차이가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승객 수에 따른 요금제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6~10인승 대형 승용택시의 경우에도 대형승합택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운임을 신고하는 “자율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